

## 이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검토보고서

1. 제출자 : 이천시장

2. 제출일자 : 2002.3. 4

3. 근거규정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2

### 4. 조례(안)주요내용

- 제1조는 동조례안 제정의 목적 및 근거규정을 규정
- 제2조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의 범위와 동위원회가 관장하는 분쟁사항을 규정
- 제3조와 제4조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자격과 임기 및 결격사유를 규정
-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6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7조는 위원장의 소집권한과 회의에서의 지위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
- 제8조와 9조는 다수인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분쟁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 제10조와 제11조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방법과 처리기간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제12조와 제13조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면서 행할 수 있는 조사권과 의견청취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
- 제14조는 분쟁조정서의 작성절차 및 그 효력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간주하는 규정
- 제15조와 16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와 종결의 요건 및 이의 통지의무를 규정
- 제17조는 당해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퇴장명령등과 당사자 등의 기록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제19조는 당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용과 부담주체, 그리고 납부 방법에 관하여 규정

- 제21조와 제22조는 회의수당의 지급과 회의록의 작성의무부여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
- 제22조는 조례에 조례규정사항 외의 집행사항에 대한 규칙으로의 위임근거 마련

## 5. 검토내용

- 본조례안은 동안 제1조의 규정과 같이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9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령동조 제1항에 의하면 “①시장 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하여 조정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로 규정하고, 궁극적인 조정의 권한은 당사자에 대한 제3자로서의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 동조례안 제2조의 본문의 상단은 “조정위원회는 시 관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자문”이라는 범위 외에 “조정”의 권한까지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고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또한 같은 맥락에서 동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제2항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례안 제8조(대표자의 선정), 제9조(대리인), 제10조(조정의 신청등), 제11조(처리기간), 제14조(분쟁조정서의 작성 및 효력),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6조(종결등) 제17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제19조(조정비용)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외에 동위원회에 실질적인 조정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사항들과 별지 제1,2,4,5호 서식 등을 본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조정(調停) : 법원이나 공공기관의 조정위원회 등의 제3자가 분쟁의 당사자를 설득하여 서로 양보하게 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것을 조정이라고 한다. 조정은 재판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는데 목적이 있다.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에 거치는 민사조정의 경우 판사의 조정에 대해 분쟁당사자가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 조정 안에 당사자가 이의가 없을 경우 조정은 이루어진다.

###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 ①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0.30]

### 법제처 질의·회신

#### ♣ 본문 내용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시장등은 공동주택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생각으로는 동령은 당해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위원회"이며, 실질적인 조정의 권한은 시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천시장에 의해 저희 시의회에 제출된 "이천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상기의 대통령령 해당조에 근거하여 제정함을 천명하면서 당해 위원회가 조정의 권한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분쟁조정의 신청이나 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요?

#### ♣ 응답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면,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므로 조정권한은 시장등이 가져야 하고, 조정의 효력은 시장등을 기속하지 아니합니다. 끝.

###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접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접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8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82.12.31>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제32조 (원인자부담금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량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당해 배수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1994.8.3, 1999.2.8, 2001.3.28>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2.12.31, 1993.12.10, 1994.8.3>

### 이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 한다.

1.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 곳에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써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킴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각 목과 같이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가 부담하게 함

- 가. 타 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타 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 나. 타 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1)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 (2)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 지방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 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 조성등)
  - (3) 공항의 건설사업
  -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시설지구등)
  - (5) 기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 구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 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
-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해손하는 경우
4.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용의 부담액과 동일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은 이를 추가로 산정·합산하여 부담하게 함<개정 2000·6·14>
- ③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되는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S F 1507)에 의한다.
-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먹는물관리법

제2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먹는샘물제조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